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 기 도

목 차

I. 2020년 보육사업 안내

○ 목 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5
○ 2020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6

II. 2020년 도정 운영 방향

○ 2020년 도정 운영 방향	14
------------------	----

III. 2020년 추진방향 및 보육여건

○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5
○ 2020년 보육환경 여건	15

IV. 2020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도비>	17
②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도비>	21
③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국·도비>	23
④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도비>	26
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28
⑥ 경기형 공보육 품질제고<도비>	31
⑦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34
⑧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도비>	45
⑨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도비>	47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국·도비>	48
② 어린이집 평가<비예산>	50
③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도비>	52
④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도비>	57
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비>	60
⑥ 어린이집 환경개선<국·도비>	62
⑦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도비>	64
⑧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국·도비>	65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도비>	66
② 누리과정 운영 지원<도비>	68
③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비>	70
④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72
⑤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도비>	74
⑥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도비>	79
⑦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82
⑧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도비>	83
⑨ 시간제보육 지원<국·도비>	85
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91
⑪ 교재교구비<국·도비>	93
⑫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집 지원<국·도비>	94
⑬ 차량운영비 지원<국·도비>	95

4. 보육교사 처우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96
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100
③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사당 지원<도비>	103
④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106
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국·도비>	110
⑥ 담임교사지원비(구 근무환경개선비)<국·도비>	113
⑦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국·도비>	116
⑧ 대체교사 인건비<국·도비>	118
⑨ 보조교사 인건비<국·도비>	124
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국·도비>	129
⑪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132
⑫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국·도비>	133
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도비>	134
⑭ 영아전문(심화)·다문화전문 교육과정 운영<비예산>	135
⑮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도비>	137
⑯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도비>	138

V.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140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141
○ 보육료 지원기준표 · 처우개선비 지원표	142
○ 주요 보육통계표	143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144

I . 2020년 보육사업 안내

목 적

이 안내(지침)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경기도 보육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도비 보조, 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일반사항

-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안내(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안내를 우선 적용한다.

□ 어린이집 세부운영 규정

- 시·군 및 각 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타 적용사항

- 보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으로 한다.
- 각종 도 특수시책사업 추진 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2020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 사유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	<input type="checkbox"/> 참여 기본요건 - 제2차 ----- (생략) - 제3차 ----- (생략)	<input type="checkbox"/> 참여 기본요건 - 제2차 ----- (생략) - 제3차 ----- (생략) - 어린이집 평가제 <u>평가결과 A등급(신설)</u>	어린이집 평가제 변경 적용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운영기준 - 평가인증유지	<input type="checkbox"/> 운영기준 - 평가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어린이집 평가제 변경 적용																				
지원내용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u>1,800천원</u> (월·인) - 추가반 운영비 : 500천원(월·반)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u>45천원</u> (월·인) - 조리원 인건비 : 600천원(월·인)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 (생략) - 추가반 운영비 : <u>600천원</u> (월·반) - (생략) - (생략)	지원단가 인상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input type="checkbox"/> 지정취소 : 시장·군수 - 0세아 ----- (생략) • 영유아 ----- (생략) ※----- (생략)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시·군 확인 및 평가인증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0세아 전용 유지 가능	<input type="checkbox"/> 지정취소 : 시장·군수 - 0세아 ----- (생략) • 영유아 ----- (생략) ※----- (생략)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인가변동사항 시·군 확인 후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는 유지가능 단, 평가후 A등급일 경우에만 지정 유지 * 평가주기 조정에 따른 평가소요 기간 (6개월~1년 내외)	어린이집 평가제 변경 적용 ※ 평가인증제 일부 확인 방문을 통해 인증유지 되었으나, 평가제에는 확인방문 폐지																				
선정기준표	<input type="checkbox"/>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 <th>세부기준</th> <th>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기타 가점 (+5)</td> <td>열린어린이집 지정</td> <td>열린어린이집 지정(우수형·지자체형)</td> <td>5</td> </tr> </tbody> </table>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기타 가점 (+5)	열린어린이집 지정	열린어린이집 지정(우수형·지자체형)	5	<input type="checkbox"/>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 <th>세부기준</th> <th>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기타 가점 (+5)</td> <td>열린어린이집 지정</td> <td>열린어린이집 지정(우수형·지자체형)</td> <td>3</td> </tr> <tr> <td>기타 가점 (+5)</td> <td>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td> <td>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시 가점부여</td> <td>2</td> </tr> </tbody> </table>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기타 가점 (+5)	열린어린이집 지정	열린어린이집 지정(우수형·지자체형)	3	기타 가점 (+5)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시 가점부여	2	경기도어린이집관리 시스템 사용 가점 부여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기타 가점 (+5)	열린어린이집 지정	열린어린이집 지정(우수형·지자체형)	5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기타 가점 (+5)	열린어린이집 지정	열린어린이집 지정(우수형·지자체형)	3																				
기타 가점 (+5)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시 가점부여	2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평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인증지표 : 통합지표 - 인증과정 : 3단계 (참여확정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인증등급 : 4등급 (A-B-C-D) - 인증주기 : (A등급) 4년, (B·C 등급 3년, (D등급) 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3단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평가등급 : 4등급 (A, B, C, D) - 평가주기 : (A·B등급) 3년 (C·D등급) 2년 	평가제 시행에 따른 사업개요 개정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어린이집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 및 교재기자재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 및 교재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u>신설</u>) <p>※ 렌탈비 예산지급액 범위내 월별 지급 가능</p>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및 평가제 C등급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19.6.12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제 변경 적용																																
경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39인 이하 : '16.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2세 이하 조리원(1947년 1월생 ~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 정원 40인 이상 : '17.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1세 이하 조리원(1948년 1월생 ~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조치(<u>삭제</u>)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기준 변경 (60세 → 65세)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 (2019.2.28.까지 지원후) 만료 삭제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민간 (3세)</th> <th>민간 (4,5세)</th> <th>가정 (3~5세)</th> </tr> </thead> <tbody> <tr> <td>수납한도액</td> <td>309</td> <td>286</td> <td>312</td> </tr> <tr> <td>정부지원 보육료</td> <td>220</td> <td>220</td> <td>220</td> </tr> <tr> <td>차액보육료</td> <td>89</td> <td>66</td> <td>92</td> </tr> </tbody> </table>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09	286	312	정부지원 보육료	220	220	220	차액보육료	89	66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민간 (3세)</th> <th>민간 (4,5세)</th> <th>가정 (3~5세)</th> </tr> </thead> <tbody> <tr> <td>수납한도액</td> <td>329</td> <td>306</td> <td>332</td> </tr> <tr> <td>정부지원 보육료</td> <td>240</td> <td>240</td> <td>240</td> </tr> <tr> <td>차액보육료</td> <td>89</td> <td>66</td> <td>92</td> </tr> </tbody> </table>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29	306	332	정부지원 보육료	240	240	240	차액보육료	89	66	92	수납한도액 변경으로 지원단가 인상 (2020. 3월부터 적용)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09	286	312																																
정부지원 보육료	220	220	220																																
차액보육료	89	66	92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29	306	332																																
정부지원 보육료	240	240	240																																
차액보육료	89	66	92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지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취소 ○ 시장·군수---(생략) -영유아보육법령-----(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취소 ○ 시장·군수---(생략) - 영유아보육법령-----(생략) <p>※ 단, 시정명령의 경우(최근 3년간)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지정취소(신설)</p>	타 보조사업과 협평성 고려, 개선사항을 확 인하여 2회 시정명령 통보를 받을 경우 지정 취소하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지정 취소로 인지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 '20.3.1부터 사업명 변경 시행									
사업명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 <u>야간연장</u>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용어 개정사항(시간연장 보육 → 야간연장 보육) 반영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u>야간 연장</u> 어린이집							
사업추진안내	○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생략)	○ 별도의 <u>야간연장</u> 보육교사---(생략)							
○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개요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운영비 지원(신설) 	신규사업						
지원기준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비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 7,400원/월/인당(신설) ○ 운영비 :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2,600원/월/인당(신설) 	신규사업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지원제외 대상 - 지원 기준일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원장) - 2019 보육사업안내 보조교사 지원제외 대상(p.437)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지원제외 대상 - 지원 기준일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원장) <p>※ '20. 3월부터 적용'</p>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변경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평가인증</td> <td>미인증</td> </tr> </table>	구 분	평가인증	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평가인증(평가제 A, B, C) 어린이집</td> <td>미인증(평가제 D) 어린이집</td> </tr> </table>	구 분	평가인증(평가제 A, B, C) 어린이집	미인증(평가제 D)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제 변경 적용
구 분	평가인증	미인증							
구 분	평가인증(평가제 A, B, C) 어린이집	미인증(평가제 D) 어린이집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능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 <u>야간연장반</u> 교사는 일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능 <p>※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신설)</p>	<p>보육체계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p> <p>자급기준 명확화</p>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p>《평가인증 어린이집 적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이 유효한(인증유지) 어린이집 교직원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p>《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 적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또는 평가제 A, B, 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의 교직원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인증취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인증종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인증 종료(평가제 변동)일의 익월부터 차감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어린이집 평가제 변경 적용
사업추진안내 (지급방식)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u>신설</u>) 	확인의무화(국비사업 준용)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 보육교사 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교원은 전원,---(생략)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 보육교사 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교원은 지원기준 적합자 전원,---(생략) <u>아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아간연장 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아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u> 	지급기준 명확화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사업추진안내 (세부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 보육교사 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교원은 전원,---(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 보육교사 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교원은 지원기준 적합자 전원,---(생략) 	지급기준 명확화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장,---(생략)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장,---(생략)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자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지급기준 명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학기 적용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수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지원기능(<u>신설</u>) 	국비사업기준준용
사업추진안내 (지급방식)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u>신설</u>) 	확인의무화(국비사업 준용)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장,---(생략)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장,---(생략)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지급기준 명확화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신 설>	※ 「어린이집 교직원 차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 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u>신설</u>) - 원장은 지원 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u>신설</u>)	지급기준 명확화																																																																																																	
사업추진안내 (지급방식)	○ <신 설>	○ 보조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시간 연장교사 ※ 단,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시간연장 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확인의무화(국비사업 준용)																																																																																																	
제외대상		○ 보조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 합지원센터, 지자체 채용) 및 어린 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 체인력, <u>야간연장교사</u> , <u>연장보육</u> <u>전담교사</u> ※ 단,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u>야간</u> 연장 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지급기준 명확화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u>연장보육 전담교사</u> , <u>야간연장보육교사</u> ,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국비지원대상 준용																																																																																																	
사업추진안내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2020년 변경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지원 사유</th> <th rowspan="2">지원 일수</th> <th colspan="4">지원 대상×</th> </tr> <tr> <th>임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th> <th>교사 겸직 원장</th> <th>교사 겸직 대표자</th> <th>조리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본인 결혼 우선 지원</td> <td>1~5일 최대 10일</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가</td> <td>1~10일 최대 10일</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3일</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일</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략</td> <td>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td> <td>1~10일 최대 10일</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임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생략	생략	○	○	○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	○	○	○	연가	1~10일 최대 10일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국비지원기준 준용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임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생략	생략	○	○	○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	○	○	○																																																																																														
	연가	1~10일 최대 10일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는 국비 대체교사를 우선 이용하도록 반드시 안내	※ <u>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하도록 반드시 안내</u>	지원순서 규정
사업추진안내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 준용 	해당근거 명확화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 일 80,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반영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조리원 : 일 66,8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반영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 일 <u>82,000원/인</u>(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u>2020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u>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u>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u>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조리원 : 일 <u>69,000원/인</u>(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 (<u>8,625원</u>)으로 지급 가능, 단 지급액 원단위 발생시 올림하여 지급(예 : 7시간=60,375원 => 60,380원 지급) 	연도변경에 따른 지원단가 변동(국비 기준 및 최저임금 준용)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u>또는</u> <u>지자체</u>)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u>또는</u> <u>지자체</u>)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국비지원사업 준용
사업추진안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생략) ○ 시 · 군---(생략) ※ 채용신체검사서---(생략) ※ 성범죄경력---(생략) ○ <u>신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생략) ○ 시 · 군---(생략) ※ 채용신체검사서---(생략) ※ 성범죄경력---(생략) ○ <u>본 지침의 사항은 2020년 보육 사업안내 준용(신설)</u> 	국비지원사업 준용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기준	<input type="radio"/> 지원기준 - 직무(6만원), 승급(12만원), 원장사전(16만원, 자부담)	<input type="radio"/> 지원기준 - 직무*(8만원), 승급(14만원), 원장사전(16만원, 자부담) * (직무)기본교육/심화교육(8만원), 장기미종사자 교육(8만원, 자부담)	교육지원단가 인상, 장기미종사자 교육 신설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지원대상	<input type="radio"/> <신 설>	<input type="radio"/> 지원기준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신설)	2020년 신규사업
지원내용	<input type="radio"/> <신 설>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1인/50만원)(신설)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대상	<input type="radio"/> <신 설>	<input type="radio"/> 지원기준 -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전담교사(신설)	2020년 신규사업
지원내용	<input type="radio"/> <신 설>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 재직중인 장애영유아전담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 (통합보수 교수전략, 교육 프로그램 작성·진단, 현장실습 등 전문적인 대면교육) (1인/100만원)(신설)	
○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 주요 내용			
보육지원체계 개편	<input type="radio"/> 맞춤반 : 09:00 ~ 15:00 <input type="radio"/> 종일반 : 07:30 ~ 19:30 <input type="radio"/> 시간연장형보육 - 시간연장보육 : 19:30 ~ 24:00 - 야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	<input type="radio"/> 기본보육 :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보육교직원 근무시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더라도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 원칙 (ex : 09:00 출근자는 18:00까지 근무) <input type="radio"/> 연장보육 : 16:00 ~ 19:30 <input type="radio"/>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 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변경 및 용어 개정

제 목	2019년도	2020년도	변경사유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기준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연장반 구성, 정원의 50% 이상 충족, 연장보육 이용시간 충족,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 지원 제외 대상: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지원 인원: 연장보육반 별 1인(만65세까지) ○ 근로조건: 1일 4시간 근무 ○ 임금: 월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보육체계개편에 따른 지원기준
재무회계규칙 기준	<p>3) 급식비(315목)</p> <p>가.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나.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야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p>4) 기타 운영비 (217목)</p> <p>나.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용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건물 용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단, 대표자 변경(변경인가)시에도 지금 가능하나 최초 설치 인가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바. 보험가입 <신 설> 	<p>3) 급식·간식 재료비(315목)</p> <p>가.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나.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야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p>4) 기타 운영비 (217목)</p> <p>나.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용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건물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대표자 변경(인가)시에는 최초 설치 인가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용자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잔여액에 대한 이자에 한해 지급 가능 - 건물 용자금 대출 은행을 중도 변경하는 경우,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용자금으로서 대출은행 변경 시점의 미상환액 규모에 한하며, 동 규모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시설회계로 지출불가(신설) <p>바. 보험가입(신설)</p> <p>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4)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p>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p> <p>건물 용자금 이자 지출 세부사항 명시</p> <p>민기환급형 보험료 적립액 관리강화</p>

II. 2020년 도정 운영 방향



III. 2020년 추진방향 및 보육여건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정책
목표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중점
추진
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서비스 지원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2020 보육 환경여건

◇ [저출산 영향] 영유아(만0~6세)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 저출산의 영향으로 道 영유아(만0~6세)인구 3년간 6.2만명(7.1%) 감소
 - 道 영유아 인구: ('17년) 83.9만명 → ('18년) 81.6만명 → ('19년) 77.7만명
 - 전국 영유아인구: ('17년) 304.5만명 → ('18년) 290.5만명 → ('19년) 272.7만명 △10% 감소
- 특히, 도내 만0세 영유아 인구는 3년간 1만명(10.9%) 감소
 - 道 만0세아 인구: ('17년) 9.2만명 → ('18년) 8.7만명 → ('19년) 8.2만명
 - 전국 만0세아인구: ('17년) 34.5만명 → ('18년) 31.7만명 → ('19년) 29.5만명(5만명 △14.5% 감소)

◇ [인구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신도시 중심 인구증가

- 도내 여성경제참여인구 3년간 84천명(5.3%) 증가, 전국 증가 492천명의 17%
 - 여성경제참여인구: ('17년) 286.5만명 → ('18년) 291만명 → ('19년) 300.2명
 - 도내 인구 증가: ('17년) 1,287만명 → ('18년) 1,308만명 → ('19년) 1,324명
- 여성경제참여인구 증가 및 신도시 입주로 어린이집 수 및 재원 아동수 큰 변동 없음
 - 어린이집 수: ('17년) 11,825개소 → ('18년) 11,682개소 → ('19년) 11,305개소
 - 어린이집재원 아동수: ('17년) 39.5만명 → ('18년) 39.3만명 → ('19년) 38.9만명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

- 기존 종일반 보육 체계 → 기본보육(09:00~16:00), 연장보육(16:00~19:30)
- 연장반 전담교사 인력수급 → 연장반 전담교사 범위 확대, 탄력보육, 인력뱅크운영

III. 2020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지원**
 -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 · 도비

보육기반팀 ☎ 8008-254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목 표

- 보건복지부 : 매년 550개소 이상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경 기 도 : 매년 150개소 이상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150개소
 - ※ 본예산 83개소(신축 7, 공동주택리모델링 76), 시군 추가 수요 신청시 추경 반영
- 소요예산(본예산) : 16,122백만원(국비 8,509 도비 3,858 시군 3,755)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지원기준(개소당, 최대) : 신축·매입 1,798백만원, 장기임차 210백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110백만원, 기자재비 10백만원
-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17 ~ '19)

연도별	사업량(개소)	유 형			비고
	합계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합계	378	46	329	3	
2019	162	12	149	1	
2018	145	12	131	2	
2017	71	22	49	0	

○ 지원내용

- 신축(매입) : 개소당 최대 1,798백만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 개소당 최대 110백만원
- 장기임차 : 개소당 최대 210백만원
- 기자재비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총사업비 : 16,122,105천 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3	16,122,105	8,508,524	3,858,218	3,755,363	

※ 본예산 기준, 시군 추가 수요 신청시 추경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63,566,443	21,801,986	25,642,352	16,122,105	

□ 사업추진 안내

○ (규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가능시설 (시행규칙 제9조)

○ (명칭) : 어린이집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군,구청장 개인성명이 아닌 oo시장, oo군수로 기재('18년 시행)

○ (설치) : 영유아보육법 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 시설)에 설치

○ (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참고 1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단위:개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축	리모델링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합계	71		145			162			83		
수원시	1	9		7		1	2			4	
성남시	1	1	1	2		1	4			2	
부천시	5	2		2	1					3	
용인시		1		6			6				
안산시	1		2	3		1	9			1	
안양시						2			1		
평택시				7			14			6	
시흥시		5	3	18			8		1	11	
화성시	6	6	1	19							
광명시		3		1			1			1	
군포시				3			3				
광주시				4			6		2	1	
김포시		6		7			1			10	
이천시					1	1	4				
안성시				2			2			2	
오산시	1	5		5			4		1	1	
하남시		1	2	9		1	16			8	
의왕시				4		1	4			2	
여주시							5				
양평군								1			
과천시							2			1	
고양시	1		1	9			11			3	
남양주		8		14			6			2	
의정부			1	3			9		1	7	
파주시		1		2			2		1	5	
양주시	1	1	1	1			3			5	
구리시	1			3			1			1	
포천시	1										
동두천											
가평군	1										
연천군	2										

참고 2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2019. 12월 말 현재)

구분	전체(개소)	국공립(개소)	운영률(%)	비고
합 계	11,305	924	8.2%	
연천군	32	7	21.9	
양평군	51	10	19.6	
과천시	46	8	17.4	
포천시	104	17	16.3	
오산시	262	40	15.3	
의왕시	136	19	14	
가평군	36	5	13.9	
하남시	239	29	12.1	
시흥시	465	53	11.4	
성남시	610	69	11.3	
광명시	274	30	10.9	
남양주시	654	66	10.1	
군포시	257	25	9.7	
고양시	769	71	9.2	
화성시	896	77	8.6	
동두천시	97	8	8.2	
안성시	180	14	7.8	
이천시	166	13	7.8	
김포시	444	34	7.7	
양주시	235	18	7.7	
부천시	579	44	7.6	
구리시	157	12	7.6	
안양시	446	33	7.4	
평택시	422	30	7.1	
광주시	346	22	6.4	
안산시	490	29	5.9	
수원시	1,062	57	5.4	
의정부시	426	23	5.4	
파주시	438	21	4.8	
용인시	916	38	4.1	
여주시	70	2	2.9	

1-2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도비

보육기반팀 ☎ 8008-4732

중소기업의 직장(공동)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확대로 일·가정의 조화문화 조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규모 미만의 사업장
 - 단, 설치의무 대상(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중 산업단지형의 대표기업으로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 ※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지원제도와 연계한 기업
-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건립비, 매입비, 전환비) 지원
- 지원기준 : 단독 최대 2천만원 ~ 산업단지형 최대 1억원

지원대상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비고
의무설치 규모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2천만원	소요비용의 5% (근로복지공단 : 소요비용의 90% 지원)
	공동		4천만원	
	컨소시엄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5천만원	
	산업단지형		1억원	

- 단독 : 1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
- 공동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
 - ※ 설치의무 사업장(대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컨소시엄형 :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
- 산업단지형 : 산단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7개 이상)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

- 지원금 종류

- 시설건립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신·증·개축에 소요된 건축비

- ※ 제외내역 : 토지매입비, 외부 부지기반 공사비, 조경공사비, 자사·계열사 사급자재비, 증축의 사유로 시설전환시 기존시설에 대한 공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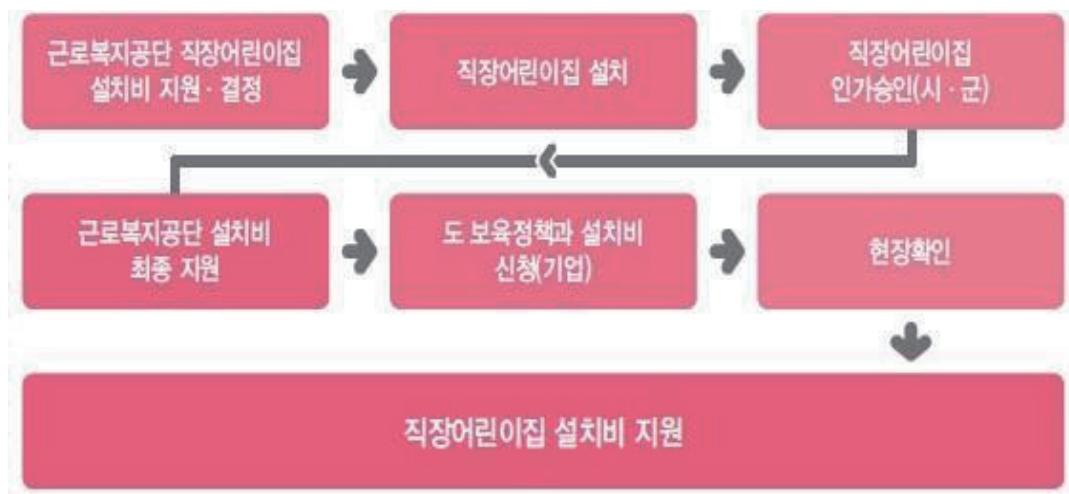
- 시설매입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매입에 소요된 매입비

- 시설전환비 : 건물(소유·매입·임차)을 직장어린이집 시설구조 변경에 소요된 비용, 기존시설 확충·이전 소요 설치비, 기타 설비비·비품비 등

- ※ 제외내역 : 토공 및 기초공사비, 골조 및 조적공사비, 지붕 및 흙통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공종전체 비용

□ 추진절차

- 사업절차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사업예산 : 97백만원 (도비 100%)

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연 역

- 시범 운영 : 2011년 7월~
- 본격 운영 : 2012년 7월~
- 운영비 지급기준 변경 : 2018년 1월~
 - 운영비 지원 상한액(월 최대 1,000만원) 폐지

□ 사업개요

-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일부 제외)
- 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량 : 641개소
- 사업비 : 25,726백만원(국비 14,060, 도비 6,704, 시·군비 4,962)
 - ※ 신규 선정 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예정

□ 지원기준

- 교사 수, 아동현원 등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지원
 - 신규 및 재선정 기관 및 기존 운영 중인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구 분	단 가	기 준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맞춤·종일·합반 1개반당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반당
3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25,726,000천 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41	25,726,000	14,060,000	6,703,600	4,962,400	

- 연도별 내역(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87,116,640	18,791,219	21,499,880	23,015,741	23,809,800	

□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588개소(증93)	608개소(증20)	610개소(증2)	641개소(증31)	

참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2019. 12월 말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개소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합 계	641	417	30	44	25	22	18	33	29	7	16
남 부	506	335	24	34	22	19	13	20	22	4	13
수원시	49	40	3	3	3	-	-	-	-	-	-
성남시	33	32	1	-	-	-	-	-	-	-	-
안양시	33	27	-	2	1	1	-	-	2	-	-
부천시	52	43	1	2	2	1	1	2	-	-	-
광명시	27	20	-	3	1	1	1	1	-	-	-
평택시	33	17	4	2	1	1	-	2	3	1	2
안산시	34	14	3	-	5	-	3	5	4	-	-
오산시	28	25	-	2	-	-	-	-	-	-	1
시흥시	25	18	2	4	-	1	-	-	-	-	-
군포시	9	9	-	-	-	-	-	-	-	-	-
의왕시	4	2	-	-	-	1	1	-	-	-	-
하남시	8	1	-	2	1	1	1	-	1	-	1
용인시	36	24	-	5	2	2	1	-	2	-	-
이천시	26	7	4	1	-	4	2	2	3	-	3
안성시	21	8	-	1	2	4	-	3	2	1	-
김포시	11	9	-	-	2	-	-	-	-	-	-
화성시	14	9	1	1	1	-	-	1	1	-	-
광주시	26	20	-	-	-	1	1	-	-	1	3
여주시	19	4	3	4	1	-	1	1	3	1	1
양평군	18	6	2	2	-	1	1	3	1	-	2
북 부	135	82	6	10	3	3	5	13	7	3	3
고양시	34	29	-	3	1	-	1	-	-	-	-
의정부	11	7	1	-	-	-	-	2	1	-	-
남양주	35	25	1	2	-	1	2	3	1	-	-
파주시	16	7	1	1	2	-	-	3	1	1	-
구리시	8	5	1	1	-	-	-	1	-	-	-
포천시	13	2	2	-	-	2	-	1	2	2	2
양주시	8	5	-	-	-	-	1	1	1	-	-
동두천	1	-	-	-	-	-	1	-	-	-	-
가평군	5	-	-	1	-	-	-	2	1	-	1
연천군	4	2	-	2	-	-	-	-	-	-	-

1-4**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사업량 : 영유아 21,979명
- 지원내용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7,91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1,979	7,912,440	2,259,504	5,652,936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급기준
 - 전월 말일 재원아동(현원) 기준으로 지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해당 월 미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및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1-5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인건비(조리원)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역

- 시행시기 : 2012년 7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량 : 641개소
- 사업비 : 5,321백만원(도비 1,448백만원, 시군비 3,873백만원)
- 지원기준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조리원 채용기준에 의거)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고
월지원액	60만원	90만원	보육현원 기준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5,320,8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641	5,320,800	1,447,560	3,873,240	

- 연도별 내역(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13,643,202	4,878,360	5,220,130	5,720,40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원요건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교직원 전원 4대 보험 납부 완료, 퇴직급여제도 설정 · 운영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교직원(조리원) 배치기준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규모 변동 시 변동일자가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해당 규모의 월 지원액 지급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하고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 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신규인증,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 공포함)}}{\text{해당월의 일수}}$)
- 지원기준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1-6 경기형 공보육 품질제고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33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에 따른 보육교직원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공보육의 품질제고 도모화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량 :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354여명
 - 교육운영 : 총 8회 / 50명 이내
- 주관 : 도 직접 운영
- 교육대상 : '19년 신임 원장(신규, 전환, 재·변경 위탁)
※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관리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교직원 역량강화 : 원장 및 교사 연수, 재무회계교육 : 컨설팅 및 소그룹교육
- 총사업비 : 32,540천 원(도비 100%)

□ 교육핵심가치

-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안전성, 개방성

□ 추진 일정

1월~2월	3월~5월	6월~7월	8월~10월	11월
사·군 협의 및 상반기 교육준비	▶ 상반기 교육 (1기 / 2기)	▶ 사·군 협의 및 하반기 교육준비	▶ 하반기 교육 (3기 / 4기)	직무교육 결과보고

참고 1

공보육 품질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계획

□ 목 적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40%까지 확대 등 국정과제 목표 및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보육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을 통해 공보육 품질제고 도모

□ 교육 핵심 가치

- (공공성)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사업 이해
- (투명성)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 (전문성) 운영자의 리더십과 영유아지도를 위한 보육 전문성 강화
- (안전성)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보육안전성 확보
- (개방성) 물리적 환경 구성과 부모참여를 통한 보육개방성 확대

□ 교육과정 및 대상인원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 직무교육과정	
	신규·전환 어린이집 신임 원장	재·변경 위탁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대상	199명	155명
교육과정	5과정 11주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안전성, 개방성)	4과정 6주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교육시간	30시간	16시간

□ 기대효과

- 공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국공립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건강한 영유아 보육 제고 기여
- 국공립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을 통해 道 전체 어린이집 적용 가능성 창출과 경기도에 맞는 독자적인 보육정책 및 방향제시

참고 2

공보육 품질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원장 직무교육 (30시간)

과정	주제	목적	시간 (30)
공공성	·보육공공성 및 정책 이해 ·경기도 공보육 추진과 보육사업 이해	• 보육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보육정책의 현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2
투명성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	6
	·어린이집 회계 실습	•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 관리는 경기도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	2
	·어린이집 운영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2
전문성	· 원장 감성리더십 -리더십의 이해 -감성 리더십 -보육현장에서의 리더십	• 리더십의 개념, 구성요소, 유형을 이해한다. • 감성과 리더십의 관계를 안다 • 감성 리더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다. • 보육현장에서 감성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4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 -표준보육과정 총론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보육과정 운영지원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기초를 이해한다. • 0-1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다. • 2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4
안전성	· 어린이집 안전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의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2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관리	• 친환경 먹거리의 개념 및 중요성을 알고 영유아의 친환경 먹거리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함	2
	· 영유아 인권친화교육	•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방성	· 부모 소통 및 지역사회 협력 -또 하나의 부모 '어린이집'	•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열린 보육기관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관별 프로그램 및 환경을 구성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을 기른다.	2

1-7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4715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 부응하여 출산율 제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혁

- 사업시행 : 2008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업량 : 303개소
-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1,800천원 / 인
 - 추가반 운영비 : 월 600천원 / 반
 -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45천원 / 인
 - 조리원 인건비 : 월 600천원 / 인
- 총사업비 : 26,85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03	26,850,960		7,111,158	19,739,802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74,149,180	23,146,200	24,152,020	26,850,960	

□ 사업 추진 안내

가.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중복 불가

○ 참여 기본요건

- 제2차 평가인증(2차 지표 또는 3차 시범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점 이상(3차 지표 85점 이상)
-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평가 등급이 A등급
-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A등급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제외대상

- 공고일이 속한 월 전월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예정) 어린이집(원장)
※ 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처분 이행 완료한 경우는 제외
- 원장이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운영자가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중인 어린이집

○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총 합계 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선정
- 신규지정 시 신규신청 해당 읍면동의 전년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 수가 364명** (경기도 읍면동 평균 0~1세 아동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읍면동에 1개소, 많은 경우 2개소까지 지정 가능 (기 지정 어린이집 포함)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197,384명 ('19. 12월말 기준 경기도 0~1세 아동 수) / 542개 (경기도 총 읍면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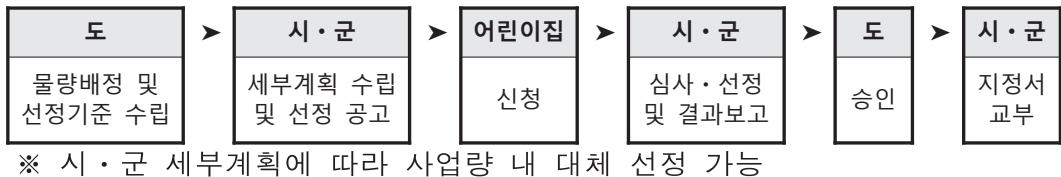
구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 · 전문성 (45)	맞춤형 보육지원 (20)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0)	
인프라 · 특성화 (55)	운영기간 · 정원충족 (20)	건물소유 · 안정성 (20)	시 · 군 특성화지표 (15)	

※ [붙임 1] 세부 선정기준표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순위

- 1순위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미설치된 행정동 소재 어린이집
- 2순위 : 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
- 3순위 : 0세아 보육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선정 및 지정절차



나.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 입소기준 : 입소월 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
 -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반 구성 가능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야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 ※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사후관리

- 홍보 : 도, 시·군을 통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지원
- 표창 : 우수 보육교직원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 교육 및 컨설팅 : 우수 어린이집 원장 컨설팅 및 원장 자율모임 공유
- 모니터링 : 신규 및 기존 어린이집 대상 연1회 실시
 - 제외대상, 운영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등 보육품질관리 확인

다.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단가	세 부 사 항
추 가 반 보육교사 인 건 비	1,8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불가)의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추 가 반 운 영 비	600천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퇴직적립금 추가반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의 제수당, 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 복리후생비 ※ 추가반 보육교사 배치에 따른 비용 우선사용 원칙
야간연장 추 가 반 근무수당	445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연장반 0세아 3명 포함 총4명 이상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야간연장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의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수당 ※ 보건복지부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동일 기준 ※ 야간연장보육 미지정의 경우도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전산상 추가반 미생성 → 시군확인 후 추가반 지급)
조 리 원 인 건 비	6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조리원의 경우,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은 후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규 지정 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하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 신규, 임용, 면직의 경우 인건비 · 운영비는 일할지급 ($\text{지원단가} \times \frac{\text{근무일수(토, 공포함)}}{\text{해당월의 일수}}$)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야간연장 이용아동이 0세아 3명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라.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 지정취소 : 시장·군수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평가인증 취소사유 외)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최근 3년간)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보육교직원 (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인가변동사항 시 · 군 확인 후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는 유지가능 단, 평가 후 A등급일 경우에만 지정 유지
* 평가주기 조정에 따른 평가소요 기간 (6개월~1년 내외)
 - * 확인방법 : '19. 4월까지 시유설생에 대하여 '19. 5월 신청한 어린이집까지 적용(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가제 D등급 (2020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평가 참고)
- 시·군 모니터링 결과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율 50% 미만시
- 지원조건 미충족 및 아동 감소 등으로 3월 연속으로 지원 중단된 경우
- 기타 시장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
- 지정취소 확정 후 도에 결과 보고 및 지정서 회수·폐기하고 시스템 정비
-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
- 취소일이 속하는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월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기준 준수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A, B, C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운영포기

-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운영포기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시·군에 제출하고 이후 지정취소와 동일 적용

[붙임 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가점	감점
맞춤형 보육지원 (20점)	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	. 70% 이상~	15	80% 이상 +3점	
		. 65% 이상~70% 미만	10		
		. 65% 미만	7		50% 미만 -3점
	야간연장보육 실시 (5점)	. 지정 · 실시	5		
		. 미지정 · 실시	3		
		. 실시가능	1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5점)	. 10년 이상	5	12년 이상 +3점	
		. 5년 이상~10년 미만	3		
		. 5년 미만	1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	. 70% 이상	10	80% 이상 +3점	
		. 60% 이상~70% 미만	8		
		. 50% 이상~60% 미만	6		
		. 50% 미만	4		40% 미만 -3점
	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점)	. 3건 이상	10	최근 3년 이내 시상 +3점	
		. 2건 이상	7		
		. 1건 이상	5		
운영기간 및 정원충족률 (20점)	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0점)	. 5년 이상	10	7년 이상 +3점	
		. 3년 이상~5년 미만	7		
		. 3년 미만	5		
	정원충족률 * 공고일 전 6개월 평균 * 농어촌지역 50% 기준 (10점)	. 80% 이상~	10	90% 이상 +3점	
		. 75% 이상~80% 미만	7		
		. 70% 이상~75% 미만	5		
건물소유 및 안정성 (20점)	어린이집 소유형태 (10점)	. 자가	10		
		. 전세	5		
		. 월세	2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10점)	. 일치	10		
		. 불일치	0		
시 · 군 특성화지표 (15점)	산업단지, 신혼부부거주, 영아보육수요, 입소대기 등 * 시 · 군별 설정 적용 (15점)	. 상	15		
		. 중	10		
		. 하	7		
기타 가점 (+5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 열린어린이집 지정 (우수형, 지자체형)	3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도입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시 가점부여	2		
합계					

※ 총 합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0세반> <혼합반 : 0세아, 1세아 각 1명시 또는 0세아만 1명 있을시>

아동수	기존 1:3 보육 반 수 (a)	전용 1:2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3명	1	2	1	
4명	2	2	1	
5명	2	3	1	
6명	2	3	1	
7명	3	4	1	
8명	3	4	1	
9명	3	5	2	
10명	4	5	2	
11명	4	6	2	
12명	4	6	2	
13명	5	7	2	
14명	5	7	2	
15명	5	8	3	
16명	6	8	3	
17명	6	9	3	
18명	6	9	3	
19명	7	10	4	
20명	7	10	4	

<1세반> <혼합반 : 1세아만 1명 있을시> <야간연장반 : 0세아 3명 이상시>

아동수	기존 1:5 보육 반 수 (a)	전용 1:3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4명	1	2	1	
5명	1	2	1	
6명	2	2	1	야간연장 추가반의 경우 국비 2명 지원시 미지원
7명	2	2	1	1개반 1:4 허용
8명	2	3	1	
9명	2	3	1	
10명	2	3	1	1개반 1:4 허용

- 예1)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7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2)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10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3) 야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0, 1세 형제자매 총 10명인 경우(4명 이상)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
- 예4)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 야간연장반 0세아 3명 미만인 경우 1:5 반편성하므로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미지원

[붙임 3]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청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입)		최초 인가일	(연/월/일)
대표자 *인가증		전화번호			원장 및 대표자 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재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참여불가)
원장 *경력증명서		FAX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결과 통지서	<input type="checkbox"/> 신규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미인증(참여불가) [인증년도(년), 통과점수 (점)] - <input type="checkbox"/> 2차지표 <input type="checkbox"/> 3차지표					
	<input type="checkbox"/> 신규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미인증(참여불가) [인증년도(년), 등급 (등급)] - <input type="checkbox"/> 3차 통합지표					
평가 여부 *평가 결과 통지서	<input type="checkbox"/> A등급 / <input type="checkbox"/> B등급 / <input type="checkbox"/> C등급 / <input type="checkbox"/> D등급 [평가년도(년), 통과점수 (점)]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중복불가)			정부인건비 지원 및 공공형,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여부		
농어촌특례 및 탄력편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전세) 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임대(월세) 보증금/임대료(/)		현재임대 계약기간 (연/월/일)~ (연/월/일)	
야간연장 운영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정 ·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지정 · 실시		<input type="checkbox"/> 실시가능	
영유아	정원/현원	합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정원	명	명	명	명	명
	현원	명	명	명	명	명

보육교직원 현황

-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총인원	원장	담임교사	조리원	야간연장 (월급여행)	야간연장 (근무수령형)	특수교사	휴직자 (출산육아)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보육교사 자격			현 어린이집 임용 일자			반
원장	000	보육교사 1급			0000-00-00			없음/○○반(0세반)
담임교사	000	보육교사 1급			0000-00-00			○○반(1세반)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야간연장								
야간연장								
휴직(출산)								

위와 같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어린이집 대표자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서

(앞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서

어린이집명				
보호자 동의율	_____%	아동수(현원)	_____명	동의 부모 수
담임교사 동의율	_____%	담임교사수	_____명	동의 담임교사수

○ 담임교사 동의서

연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성 명	직 위	서명(인)
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보호자 동의서

연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여부	아동명	보호자명	맞벌이여부 (입소우선순위 기준)	서명(인)
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6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7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8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9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0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6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사업참여 동의율 보호자와 보육교사 각각 80% 이상
- 계산식 1 = (동의 담임교사 수) / (전체 담임교사 수) * 100
- 계산식 2 = (동의 보호자 수) / (재원아동 수) * 100
 - ▶ 보호자, 담임교사 동의 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반드시 필요
 -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 (야간연장형 교사,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는 제외)
 - ※ 원장이 담임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담임교사 산정에서 제외
 - ▶ 보호자 동의는 부모, 조부모, 보호자 중 1명만 동의해도 모두 동의한 걸로 간주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경기도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경기도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소속	_____어린이집	직위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원장
어린이집 주소				

2020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정보원장,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5]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제 호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

대 표 자 : ○ ○ ○ (1900년 0월 0일생)

소 재 지 :

위 어린이집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 군수(관인)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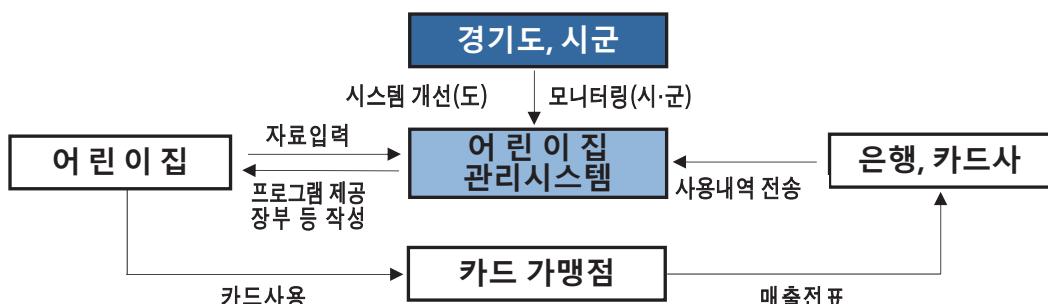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도 ~ 계속
- 소요예산 : 29,180천원 (2020년도 사용자교육 운영비)
- 사용대상 : 경기도 소재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의무 사용
- 사업내용
 -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비를 승인(등록)된 결제카드(클린카드)로 사용하고, 내역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시스템 (<http://www.acccg.co.kr>)에 등록 관리

※ 클린카드란?

-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로 지정은행(NH농협, 신한)에서 발급
- 원장이 지정은행(NH농협, 신한)에서 클린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발급 후 1주일 소요)
※ 시스템 등록 문의(헬프데스크) 1644-6840

- 운영체계



-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시스템 운영 총괄,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사용자관리
- 시군 :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 어린이집 : 시스템 이용, 클린카드(어린이집 운영카드) 사용
- 은행(카드사) : 운영 사업비 부담, 시설의 카드사용 내역 자료 전송, 적립금 지급
- 시스템업체 : 시스템 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대행, 사용자 지원

- 시군 관리자의 관리

- 신규 사용자는 시스템 등록, 사용 종료자는 시스템 등록 말소

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시 혜택

- 시스템 사용료 무료 및 카드사용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연 1회)
- 사용자 활용교육 실시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

- 연중 시스템 사용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 정기교육 : 매월 1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전산교육장, 의정부시청 전산교육장
- 수시교육 : 시군이 교육희망자를 모집해서 요청할 경우/ 시군 전산교육장
- 보육코디 교육 : 보육코디를 활용한 지역내 어린이집의 시스템 실무 교육

※ 보육코디네이터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이 능숙한 어린이집 원장 선발('20.2월~12월 활동)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편리한 기능

- 회계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 출력물 없이 전자파일로 관리
-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회계처리 가능
-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자동연동으로 편리한 전표 처리 및 계정과목 처리에 따른 각종 회계문서 자동생성, 보육통합(CIS) 회계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회계보고 전에 자가검진 기능으로 오류조치 가능
- 예산결산관리의 예산보고서/결산보고서 작성 기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명단을 연동하여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청구/수납, 정산관리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교직원명단을 연동하여, 봉급 및 퇴직금, 휴가 관리

1-9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도비

보육정책팀 ☎ 8008-4733

- 지역여건을 감안한 아이사랑 놀이터 확대 설치로 수요자 중심 육아 환경 조성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사업량 : 2020년 9개소 ※남부 7(성남, 안산, 부천, 군포, 오산, 의왕, 여주) 북부 2(남양주, 구리)
- 선정기준 :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미설치 지역, 인구대비 시설부족,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 우선
- 소요예산 : 2,05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유휴시설 등을 활용(리모델링)하여 아이사랑놀이터 조성 및 부모육아 지원
 - * 실내놀이터 이용, 장난감 대여, 놀이지도 및 육아상담 서비스 등 실시
 - 지원내용 : 100만원/m², 개소당 300m²(바닥면적 기준)까지 최대 3억원

다. 향후계획

- 정책목표 : 민선7기내 아이사랑놀이터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
 - 기설치 현황(‘19.12월기준) : 29개 시·군, 94개소
 - ’20년 8개소, ’21년 7개소 이상 확충 계획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2-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국 · 도비

보육기반팀 ☎ 8008-2542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4개 분야 20개 지표를 모니터링 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 모니터링단)

□ 사업개요

- 사업량 : 2,709개소(남부 3,853, 북부 1,856)
 - ※ 제외대상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린이집, '19년 열린어린이집(1,470개소), 당해 연도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구성 : 시군별 10명 이내(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하며,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구성인원 : 250여명 (남부 190여명, 북부 60여명)

○ 사업내용

- 모니터링단 구성 : 250여명(남부 190, 북부 60)
 - ※ 시군별 10명 이내(부모 및 전문가 1:1)로 하며,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또한 부모는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로 선정
 - 어린이집 방문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정된 시간에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4개 분야 20개 지표를 모니터링

건강관리(4)	안전관리(6)	급식관리(5)	위생관리(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예방·관리- 응급조치 체계- 비상약품 구비- 투약의뢰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외 시설 관리-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등·하원 인계과정-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아동권리존중 실천- 아동학대예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단 및 영양관리- 식품 알레르기 관리- 조리과정 위생- 식자재 보관규정- 식자재 보관 장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조리직원 복장 위생- 급·배식도구 및 과정 위생- 식수 및 우유 등 관리- 실내공간 및 놀잇감 청결- 개별침구, 칫솔 등 청결- 환기 및 온도 관리

○ 모니터링 결과 활용

-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등급은 의무적으로 컨설팅 연계하고, 컨설팅 후 1개월 내에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여부 확인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시군 및 경찰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 집행기준

구 분	세부 내역
활동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개소에 한함 - 부모 4만원 내외, 보육·보건전문가 5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부모 1인 파견 시 5만원 내외 지급 가능
컨설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컨설턴트 : 8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컨설팅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1일 1~2개소 실시
운 영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여비 : 부모, 전문가 4만원/1회당 • 모니터링단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대관료, 교재제작비 및 현장학습비, 사업평가비 등은 사업비 총액의 40% 이내에서 집행

○ 총사업비 : 742,6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기금)	도비	시군비	
계	5,709	742,600	371,300	185,649	185,651	
본 청	3,853	556,950	278,475	139,237	139,238	
북부청	1,856	185,650	92,825	46,412	46,413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1,897,470	647,870	507,000	742,600	
본 청	1,414,988	479,838	378,200	556,950	
북부청	482,482	168,032	128,800	185,650	

2-2 어린이집 평가

비예산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26

어린이집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11.)으로 '19. 6.12.부터 의무평가제 시행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3단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평가등급 : 4등급(A, B, C, D)
- 평가주기 : (A · B등급) 3년, (C · D등급) 2년

□ 연도별 추진실적

- 평가(인증) 현황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도별	구분	전체 어린이집수(A)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B)	평가인증율(%) (B/A)×100	평가어린이집 수** (C)	평가율(%) (C/A)×100
2017년	경기도	11,825	9,662	81.7	-	-
	전 국	40,238	32,630	81.1	-	-
2018년	경기도	11,682	9,527	81.6	-	-
	전 국	39,171	31,625	80.7	-	-
2019년	경기도	11,305	9,135	80.8	706	6.2
	전 국	37,371	30,061	80.4	2,070	5.5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연도별 12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참여 현황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도별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참여확정 어린이집수	참여확정후 포기 어린이집수	결과발표 어린이집수		선정통보 어린이집 수	선정통보후 평가제외 어린이집수	결과발표 어린이집 수
				인증	불인증			
2017년	경기도	3,606	63	3,495	48	-	-	-
	전 국	12,202	203	11,833	166	-	-	-
2018년	경기도	2,375	46	2,268	61	-	-	-
	전 국	7,674	133	7,247	294	-	-	-
2019년	경기도	3,275	154	3,000	121	767	61	706
	전 국	10,411	548	9,455	408	2,287	217	2,070

참 고

시 · 군별 평가[인증] 현황

(2019. 12월말 기준/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A)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B)	평가인증율 (B/A) × 100	평가 어린이집수**(C)	평가율 (C/A) × 100
경기도	11,305	9,135	80.8	706	6.2
수원시	1,062	888	83.6	74	7.0
성남시	610	506	83.0	41	6.7
고양시	769	567	73.7	43	5.6
부천시	579	510	88.1	29	5.0
안양시	446	428	96.0	16	3.6
안산시	490	402	82.0	41	8.4
용인시	916	723	78.9	58	6.3
의정부시	426	338	79.3	28	6.6
남양주시	654	525	80.3	39	6.0
평택시	422	300	71.1	23	5.5
광명시	274	233	85.0	17	6.2
시흥시	465	367	78.9	26	5.6
군포시	257	212	82.5	17	6.6
화성시	896	697	77.8	62	6.9
파주시	438	332	75.8	27	6.2
이천시	166	142	85.5	6	3.6
구리시	157	139	88.5	7	4.5
김포시	444	362	81.5	32	7.2
포천시	104	79	76.0	11	10.6
광주시	346	257	74.3	23	6.6
안성시	180	140	77.8	9	5.0
하남시	239	179	74.9	20	8.4
의왕시	136	111	81.6	4	2.9
양주시	235	188	80.0	17	7.2
오산시	262	232	88.5	12	4.6
여주시	70	63	90.0	3	4.3
양평군	51	48	94.1	3	5.9
동두천시	97	72	74.2	6	6.2
과천시	46	38	82.6	5	10.9
가평군	36	31	86.1	3	8.3
연천군	32	26	81.3	4	12.5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19.12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 수

2-3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추진

도비

보육컨설팅팀 ☎ 8008-2596

어린이집 중복점검을 최소화와 31개 시·군간 행정처분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2 (위법행위의 신고절차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사업개요

- 지도점검을 정기점검+평가제 기본사항 확인+평가제 컨설팅 통합
사전 컨설팅 위주의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실시
- (목 적) 어린이집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 (방 법) 영유아보육법 개정(‘19.6월)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와
놀이중심 보육과정 개편(‘20.3월)에 맞춰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및
어린이집 정기점검 병행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지속 확보
- (원 칙) 중복점검 최소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신뢰 확보
⇒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과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에
“놀이중심 보육과정” 평가 지표에 맞춘 보육컨설팅 강화 및 평가받지
않은 어린이집 홍보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 미평가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공감대 확산
 - 시군 공무원 및 보육컨설팅 전문성 강화 : 2회 교육, 수시

참고 1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추진계획

□ 목 적

정기점검·평가제 기본사항 확인·평가제 컨설팅을 보육컨설팅으로 일원화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 방 법

어린이집 질 관리의 지속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사전·합동·추가·사후) 컨설팅과 법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단독 컨설팅으로 구분 운영

- 사전 컨설팅 : 지표교육, 온라인, 현장방문 등
- 합동 컨설팅 : 평가제 기본사항 확인 + 현장방문 평가제 컨설팅
- 추가 컨설팅 : 합동 컨설팅 후 보완 및 평가제 추가지원
- 사후 컨설팅 : 평가제 결과 연계 컨설팅
- 단독 컨설팅 : 어린이집 정기점검

*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매뉴얼」(목적, 업무추진 절차, 현지 지도·점검 절차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후 관리 방식 등), 어린이집 평가제 업무매뉴얼 준용

□ 기본방침

○ 중복점검 최소화

-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는 서류 간소화 및 어린이집 방문 횟수 최소화
 - * 합동컨설팅 중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실시

○ 협조체계 구축

- 시·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상호신뢰 확보

- 시·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고충 상담·해소에 노력하고 전문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육 컨설팅 실시
- 어린이집은 보육 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

□ 기관 역할 분담

- 도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컨트롤 타워, 컨설팅 정책개발 등
- 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 컨설턴트 미 배치 시·군(안성,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합동컨설팅
 - 컨설팅사례 DB구축·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매월1회)
 - 미평가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실시
 - 재무회계·평가제 컨설팅 종합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연 2회이상)
 - ※ 컨설턴트 미배치 시·군은 도·북부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업무처리

□ 추진내용

- 단독컨설팅 : 7,914개소(전체 어린이집의 70%)
 - 대상 : ‘20년 합동 컨설팅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 ※ 2년 이상 단독컨설팅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없도록 계획 수립
 - 절차 : 컨설팅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 점검기회 제공 후 실시
 - 중점내용
 -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및 보조금의 사적유용 여부 등
 -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 영수증 펼히 첨부)
 -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여부
 - 아동학대, 정원 및 반 편성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운영 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 아동·보육교직원 혜위등록, 보육교직원 근무실태, 평가제 관련 비리 등
 - 급·간식 운영 적정성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 어린이집 안전관리(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신고여부 등)
 -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 특별(기획)점검 : 사회적 이슈, 특정분야(아동학대·CCTV 등) 반복 위반사례 필요시 실시
 - ※ 점검분야 및 일정 등 계획 별도수립·통보

- 수시점검 :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
 - 보육료 부정수급, 아동학대,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 중대 위반 행위, 시·군 기피민원 등(필요시 道-시·군 합동 점검)
 - ※ 점검일정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
- 합동컨설팅 : 3,391개소(전체 어린이집의 30% 내외)
 - 대상 : '20년도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
 - (1순위 : 신규, 2순위 : 정기, 3순위 : 품질)
 - ※ 정기 및 품질평가 신청 어린이집 중 컨설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
 - 추진주체별 역할
 - 시·군·구 :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및 업무마감통보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 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사례 DB구축, 사후관리, 평가제 참여(예정) 또는 신규 어린이집 대상 홍보 · 관리 등
 - 절차

① 대상 선정(보육통합시스템 등) 및 계획수립 ⇒ ② 어린이집 자체점검 사전안내
 ⇒ ③ 어린이집 자체점검 ⇒ ④ 자체점검보고서(미흡한 영역·애로사항 등) 시·군 제출
 ⇒ ⑤ 중점 컨설팅 내용 선정 ⇒ ⑥ 컨설팅 실시 및 개선사항 등 제안(「경기도형 보육 컨설팅」결과통보) ⇒ ⑦ 개선내용 시·군에 통보 ⇒ ⑧ 컨설팅 종료 또는 추가 실시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결과통보서 (붙임)

- 기타사항
 - 컨설팅 인력부족 등 사정에 따라 위촉 컨설턴트 운영(보육컨설턴트 자격에 상당한자) 가능
- 사전 컨설팅(추진주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인증 업무 담당자)
 - 대상 : '20년도 신규 및 정기 평가 어린이집
 - 주요내용 : 지표교육, 온라인, 현장방문 등
- 추가컨설팅 (추진주체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등)
 - 대상 : 합동컨설팅 후 보완 및 평가제 추가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 주요내용 : 문서 미비사항 · 교사 상호작용 등

- 사후컨설팅 (추진주체 : 경기도형 보육전문컨설팅)
 - 대상 : 평가제 통과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집
 - 주요내용 : 평가인증 유지관리를 평가인증 항목

(붙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결과통보서

컨설팅일시			컨설팅장소			
컨설팅대상자	어린이집명		성명			
	주소					
컨설팅내용						
컨설팅결과						
컨설턴트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그 밖의 안내사항						
<p>「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라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기관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p>						

* 행정처분을 하자 하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실시

2-4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4715

어린이집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역

- 사업시행 : 2017년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사업량 : 9,627개소
- 지원액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만원
 - 그 외 어린이집 : 월 10만원
- 총사업비 : 14,78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627	14,784,390		3,497,376	11,287,014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43,604,480	14,445,290	14,374,800	14,784,39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방법 및 내용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 지급일로 함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의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렌탈비 예산지급액 범위내 월별 지급 가능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기밥솥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으로 영아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 제외
- A4용지, 토너 등 소모품은 가능하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어린이집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월 지원액 범위 내 집행 원칙으로 할부 등으로도 구입 불가)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사 학습, 및 연구활동(서적구입 등), 교육, 전문가 자문 등 경비
- 학습활동과 무관한 경비(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교통비 등) 제외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소화설비 등 재난대비 물품, 차량안전설비 등 보호장구, 기타 아동 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의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료는 가능하나 안전공제회,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공제)료 제외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전체 영아반의 아동 현원이 1인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월중에 한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익월부터 미지원
- 2~3세 혼합반일 경우 미지원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B,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B,C등급) 어린이집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지원대상
- 인증취소(평가제변동)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인증종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평가제 변동)의 익월부터 미지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 ② 총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③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어린이집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 제외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ex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경우 전액 환수
- 지원요건 ②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프로그램 지원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지원요건 ③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어린이집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미 증빙 집행액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액을 전액 환수

라. 지원 제외

- 지원연도 2년 이내에(2018년 1월 1일 이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등에 따른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2-5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4715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조리원
별도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혁

- 사업시행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 사업량 : 6,559명
- 지원내용 : 월 300천원 / 1인 / 1개소
- 사업비 : 23,61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559	23,612,400		5,203,440	18,408,96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76,154,400	28,742,400	23,799,600	23,612,400	

□ 사업 추진 안내

-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 ※ 평가결과 발표일의 익월부터 지원
 - ※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국·도비 조리원 인건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
-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조리원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리원은 어린이집에서 조리, 급식 및 위생 관련업무 수행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 $\frac{\text{근무일수(토, 공포함)}}{\text{해당월의 일수}}$)
- 지원 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평가제 D등급 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까지 지원

2-6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도비

보육기반팀 ☎ 8008-2543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 사업량 : 217개소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지원 등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증·개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최대 184,404천원/개소 ※ 최대 132㎡(1,397천원/㎡)까지 지원 ※ 국비 최대 92,202천원 지원
개·보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최대 30,000천원/개소 *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20,000천원~40,000천원 차등지원 가능
개·보수 (장애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최대 30,000천원/개소 *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20,000천원~40,000천원 차등지원 가능
장비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최대 2,000천원/개소
장비비 (장애아)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20인 미만 : 3,000천원/개소 20인 이상 : 4,000천원/개소

- 총사업비 : 3,095,200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17	3,095,200	1,559,904	774,750	760,546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예산액	5,792,078	1,749,984	1,499,602	2,542,492	

□ 참고사항

-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IX-15>
 -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국고보조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 시·도지사 변경승인사항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 지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
 -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받음
 - * 교재·교구가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2-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

보육기반팀 ☎ 8008-473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통해 실내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 환경조성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 사업량 : 11,305개소
- 사업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공기청정기 지원
- 지원기준
 - 렌탈비 : 1대 당 월 11천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 총사업비 : 6,152,255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어린이집수)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11,305	6,152,255	1,845,676	4,306,579	
남부	8,357	4,447,344	1,334,203	3,113,141	
북부	2,948	1,704,911	511,473	1,193,438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신청 및 지원)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공기청정기 지원을
연중 신청 받아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시점) 시·군에서는 신청일 기준 익월 분부터 분기별 지급
※ 12월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 (정산) 사업완료 후 어린이집으로부터 증빙자료(고지서 등) 확인 및 반납
- (지원 중단) 공기청정기 설치기준 위반 및 허위신청, 임의로 변경하여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조치

2-8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국·도비

보육기반팀 ☎ 8008-2543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 경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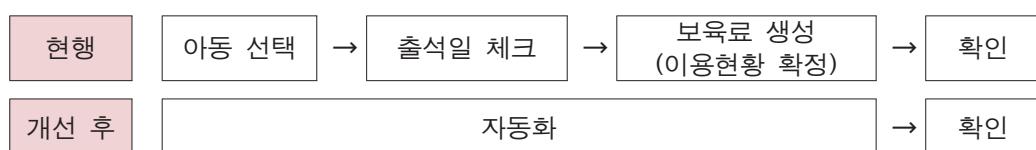
- 사업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 사업량 : 11,305개소('19.12말)
- 사업내용 : '20.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
- 지원내용
 - 리더기(어린이집 설치) : 개소 당 최대 300천원
 - 태그(아동 소지) : 영유아 1명 당 최대 5천원
- 총사업비 : 5,400,750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1,305	5,400,750	2,741,900	1,350,179	1,308,671	

□ 참고사항

-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로 아동이 소지한 태그를 감지하여 등·하원 시간 인식
- 아동의 출석정보를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문자)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 경감(예:자동 출석부 작성, 보육료 생성 등)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3-1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보육부담 완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연 역

-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사업량 : 190,427명
- 총사업비 : 1,486,015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90,427	1,486,015,307	1,035,131,000	260,052,680	190,831,627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4,489,697,463	1,471,160,560	1,532,521,596	1,486,015,307	

□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일반아동

- 적용 기간 : 2020.1.1.~2.29.

(단위 : 원/월)

구분	종일반		맞춤반			비고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긴급보육 바우처	
0세반	470,000	500,000	367,000	500,000	60,000	(0~2세반) '19년 대비 부모보육료 3.3% 인상
1세반	414,000	272,000	322,000	272,000	60,000	
2세반	343,000	184,000	268,000	184,000	60,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 적용 기간 : 2020.3.1.~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70,000	500,000	
1세반	414,000	272,000	
2세반	343,000	184,000	(0~2세반)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으로 맞춤반 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폐지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 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478,000	559,000	'19년 대비 부모보육료 3.5%,
방과후	239,000	476,000	기본보육료 2.9% 인상

○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인아동	비고
지원단가	3,200	4,200	'19년 대비 3.0% 인상

3-2 누리과정 운영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3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연 혁

- 2012년 3월 만 5세, 2013년 3월 만 3~4세 확대도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사업량 : 160,414명
- 사업비 : 558,241백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 지원내용 : 310천원/인, 월
 - 3~5세 보육료 : 240천원/인, 월(‘20.3월부터 적용)
※ 2020년 3월부터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증액
 - 누리과정 운영비(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 70천원/인, 월
※ 기존 운영비 외 처우개선비 3만원 및 운영비 8,140원 추가 지원
- 총사업비 : 558,241백만원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60,414	558,240,720		558,240,72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1,665,546,722	546,571,682	560,734,320	558,240,720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료 : 만3~5세 아동 1인당 240천원/월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70천원/인, 월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60천원) 포함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40천원 지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4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 천원)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 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적용) 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 * '19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8,120원) 적용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 도(시·군)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단,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 사용은 제한

3-3**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3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 연 혁

- 2012년 1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사업량 : 36명
- 지원내용 : 월 100천원/인
- 총사업비 : 50백만원(교부금 65%, 도비 17.5%, 시군비 17.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교부금	도비	시군비	
계	36	50,400	35,700	8,820	5,880	

□ 연도별 투자계획(교부금+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211,675	96,722	64,553	50,40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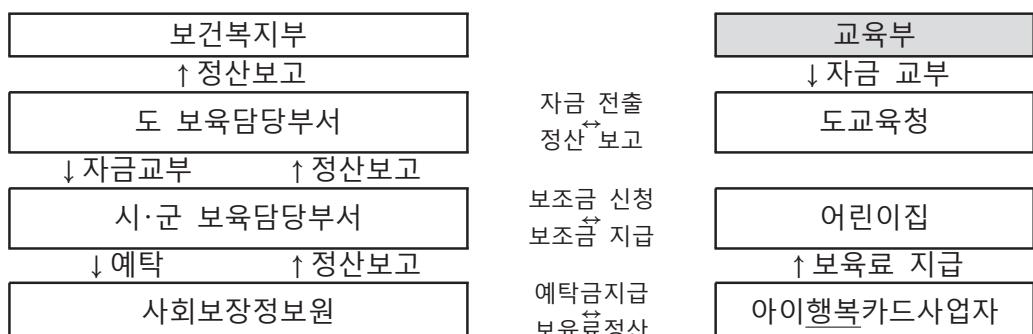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 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단가

구분	차상위이하 아동	장애인
예산과목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월 100	239
방학중 종일제 보육	월 200	479

※ 방중 종일제 보육료 결제 중 50%는 보조금으로 지원, 보조금 신청 시기는 보육통합시스템상 매년 별도 통보

-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3-4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3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비용의 보조)

□ 연 역

- 2012년 3월 최초 시행
- 2013년 3월 3~4세까지 확대
- 2018년 3월 누리과정 및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통합
- 2018년 3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2020년 보육사업안내 p323(가.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과 동일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지원대상 관련사항 보육통합시스템(시·군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활용
- 사업량 : 112,963명
- 지원기준 : 민간3세 89천원, 민간4,5세 66천원, 가정3~5세 9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민간(3세)	민간(4,5세)	가정(3~5세)
수납한도액	329	306	332
정부지원 보육료	240	240	240
누리차액보육료지원금	89	66	92
부모부담보육료	-	-	-

- 총사업비 : 103,20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	도비	시군비	
계	112,963	103,209,192		25,615,899	77,593,293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285,374,731	87,088,330	95,077,209	103,209,192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방식

-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 차액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차액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구간으로 구분
 - 출석일수가 1~ 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100%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출석인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시 입소일이 신청일

3-5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 ·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3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연 역

- 2009년 7월 최초 시행,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영유아
- 사업량 : 192,115명
-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인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56천원	
36 ~ 47	100천원	129천원	
48 ~ 86		100천원	

- 총사업비 : 348,319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92,115	348,319,194	243,341,000	60,955,860	44,022,334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1,095,595,315	385,963,250	361,312,871	348,319,194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인 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인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36 ~ 47		129천원	
48 ~ 86		100천원	100천원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 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라.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시장·군수가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바.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 청구의 소 등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II. 조사' 내용 참고

- (예시) '19.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19.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19.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19.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19.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19.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요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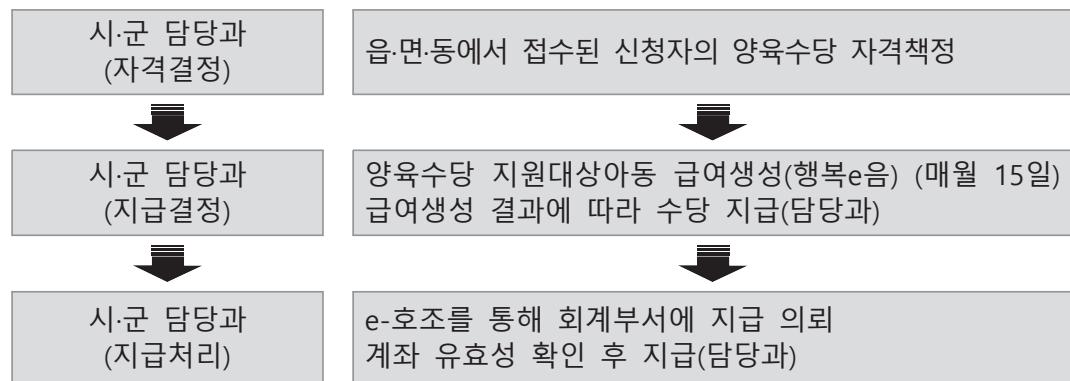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 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은 급여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금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 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및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에서 서면(우편) 고지

3-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4715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역

- 시행시기 : 2006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단,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
- 사업량 : 93개소 95명
- 지원내용 :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전담3인, 통합1인)
 - 교사 인건비 : 월 1,800천원 / 인
- 총사업비 : 2,05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5	2,052,000		438,480	1,613,52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5,152,800	1,459,200	1,641,600	2,052,0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
저소득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전담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국내아동과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당 3인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배치 기준에 따른 반 당 교사 1인- 현원기준 0세반 2명, 1세반 3명, 2세 이상 반 50% 이상일 경우 또는 보육교사 배치 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인원이 1 ~ 5명 : 보육교사 1인· 보육인원이 6 ~ 10명 : 보육교사 2인· 보육인원이 11명이상 : 보육교사 3인※ 아동이 위의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월의 익월까지 지원	◆ 어린이집 당 1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인원이 3명 (연령에 관계없이)이상일 경우※ 아동이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 되는 월의 익월까지 지원

나. 지원시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보육교사 적정배치, 어린이집인가 등)을 갖추어 운영하는 월의 익월부터

다. 운영기준

-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이상 감면하도록 행정권고
-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 관리카드(아동명, 연령, 주소, 국적, 보호자 성명 및 직장명, 전화번호, 입·퇴소 시간, 아동사진 등) 작성 비치

라.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사업량 내 대체지정 가능)
 - 영유아보육법령 및 관련 지침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시정명령의 경우(최근 3년간) 1회위반 경고, 2회위반, 지정취소
 -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개월 연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첨부1>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 소	(전화 :)			
어린이집 개요	명 청		어린이집 종별		
	소재지	(전화 :)			
	원장성명		생년월일		
	보육정원	명(0세 명, 1세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어린이집 설비	보육실	m ²	양호실	m ²	대지 m ²
	놀이터	m ²	조리실	m ²	기타
	사무실	m ²	목욕실	m ²	
교직원	총 인원		보육교사		비고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		원		

위와 같이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없음
2.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아동 명단 1부	
3. 외국인근로자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3-7**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2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야간 연장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혁

- 시행시기 : 2007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 사업량 : 1,868개소
- 지원내용 : 운영비 월 400천원 보조
- 총사업비 : 8,96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68	8,966,400		2,337,120	6,629,28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27,398,400	9,465,600	8,966,400	8,966,400	

□ 사업 추진 안내

- 별도의 야간연장 보육교사 또는 수당형 보육교사[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국비)가 지급되는 달만 운영비 지급
※ 일할계산 불요, 정액 지급
- 운영비는 야간연장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으로 활용

3-8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2

차량기사의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21개소

- 지원액

- 운전기사 인건비 : 월 150만원 ※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채용시
- 교재교구비 : 연 200만원

- 총사업비 : 33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1	330,000		85,800	244,20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989,912	329,912	330,000	330,000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나. 지원요건

○ 공통사항

-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인아 9명 이상 포함) 보육

○ 운전기사 지원요건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준수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제51~53조)
 -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다.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라. 제외대상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대상

-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지원시 환수조치), 시정 등 완료시 익월부터 지원

마. 지원중단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혹은 통학차량 미운영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비상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연혁

- 사업시행 : 2013년(경기도 2014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 영아
- 사업량 : 109반(남부 76, 북부 33)
-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구 분	제공기관
대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관련시설
인건비	<p>보육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3,000원) + 부모부담금 25%(1,000원)] (월 80시간 이용 가능)
주요역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1개반 기준) 인건비·운영비 10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인건비·운영비 70%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구 분	관 리 기 관
적용시점	현 행 (2020.1.1.~)
대 상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2명, 북부1명)
인건비	(관리자)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 3. 1.부터 적용
운영비	월 95만원(남부), 60만원(북부)
주요역할	상담, 예약 및 모니터링 등 지원·관리
비고	2017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총사업비 : 4,922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시간제 제공기관	109개소	4,922,280	2,496,500	1,230,570	1,195,210	
시간제 관리기관	2개소 3명	113,000	56,500	56,500		국50%도50%
시간제 인프라구축	2개소	40,000	20,000	10,000	10,000	고양시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834('19.9.27)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지원 (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10,870,259	2,678,664	3,269,315	4,922,280	

□ 사업 추진 안내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 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관리 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경력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p><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p>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p>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p>	
담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 ○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 ○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2015. 1. 1.~)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지원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단, 개시 1년 미만 제공기관은 사업 개시 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반 등록 기준

*** 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3.1일부터 적용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마. 운영 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table border="1"> <tr> <td>이용단가</td> <td>시간당 4천원</td> </tr> <tr> <td>지원단가</td> <td>시간당 3천원</td> </tr> <tr> <td>부모부담</td> <td>시간당 1천원</td> </tr> </table>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 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기본보육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3

※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

3) 운영시간

-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 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 양육수당 신청시 시간제보육 이용권 지급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3-10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3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고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19년 7월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급식비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운영비 :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 사업량 : 373,544명(정부미지원 310,306명 / 정부지원 · 공공형 63,238명)

- 지원내용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2,600원/인·월

- 사업비 : 42,85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명)		사업비(단위 : 천원)		
	급식비	운영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373,544	310,306	42,852,254	12,855,676	29,996,578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2월 : 3일(월), 8월 : 3일(월))

- * 어린이집 미신청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소급 지원 가능

- 급식비 지원(아동 1인당, 1일, 20.3월부터 적용)
 - 영아(0~2세) : 2,470원(정산 기준 2,270원)
 - ※ 1,9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 유아(3~5세) : 3,070원(정산 기준 2,870원)
 - ※ 2,5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 집행내용
 - 급식비 :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 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지원 아동 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 후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급식비와 운영비 각각 입금
 - (집행) 보조금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
 - (정산) 급식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시군 자율 정산
- 운영비 지원제외 대상(‘20.3월부터 적용)
 - 지원 기준일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원장)
 - ※ 영유아보육법 및 2020 보육사업안내 준용

평가인증 유지 및 평가제 평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및 보육환경 조성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평가인증 어린이집 및 평가제 평가 B등급 이상
 - ※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제외
 - ※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량 : 8,836개소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 100만원/개소당
- 총사업비 : 5,487,156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836	5,487,156	3,035,560	1,448,681	1,002,915	

* 시군별 차등보조 적용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16,236,132	5,266,536	5,482,440	5,487,156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 연중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향)
 - ※ 재원아동 수를 감안,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혀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된 교재교구비 전액 환수

3-12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국 · 도비

보육기반팀 ☎ 8008-4731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이용 아동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 사업량 : 41개소

- 지원내용 :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

- 지원기준 : 개소당 월 200~280천원(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지원)

정원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천원/월	250천원/월	260천원/월	270천원/월	280천원/월
61~ 80%	220천원/월	230천원/월	240천원/월	250천원/월	260천원/월
81~100%	200천원/월	210천원/월	220천원/월	230천원/월	240천원/월

- 총사업비 : 110,249천 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1	110,249	58,887	28,684	22,678	

※ 시군별 차등보조 적용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금 전액 환수

3-13 차량운영비 지원

국 · 도비

보육기반팀 ☎ 8008-4732

농어촌소재,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접근성 강화 및 장애아동의 편의 증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지원
- 사업량 : 1,842개소
- 사업내용 : 농어촌 소재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연 240만원/개소당
- 총사업비 : 4,422,086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42	4,422,086	2,471,318	1,186,152	764,616	

※ 시군별 차등보조 적용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9,166,872	2,406,881	2,337,905	4,422,086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 보관(시장·군수 제출 요구 시 제출)
※ 9인승 이상에 한하여, 경우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합버스로 지정받아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혀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된 차량운영비 전액 환수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4-1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역

- 시행시기 : 2000년(정부지원), 2003년(정부미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원장 · 조리원
 -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장애아전문 · 통합 및 일반 어린이집 치료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사업량 : 60,285명

- 지원내용

구 분		평가인증(평가제 A, B, C) 어린이집	미인증(평가제 D) 어린이집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원/인	월120천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원/인	월370천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원/인	월170천원/인
	치료사	월450천원/인	월42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 60천원/인

- 총사업비 : 119,12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60,285	119,121,600		28,291,620	90,829,98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356,856,729	116,996,289	120,738,840	119,121,6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임산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 B, 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의 교직원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인증종료(평가제 변동)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지급방식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세부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 보육교사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리원은 지원기준 적합자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복지관,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및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전액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전액 지급)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직원(임시교직원)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 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역

-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월급형(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대체교사(관리자 제외)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사업량 : 55,104명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 총사업비 : 34,959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5,104	34,959,240		17,479,620	17,479,62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100,835,880	32,317,560	33,559,080	34,959,24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월급형 대체교사도 동일 기준 정부지원 단가 적용, 관리자 제외)
 - * 월급여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신학기 적용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지급 가능
 - * 임산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처우추가”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세부 지원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전액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전액 지급)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혁

- 시행시기 : 2002년, 2012년(다문화), 2018년(영아심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구 분	지원액	대 상	전문교사 요건
영 아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담당교사 <p>※ 일시보육반(0,2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3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다 문 화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장 애 아 전문교사	월1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 담당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육교사 교육원 “장애인 전문교육과정 (2012년까지 시행)” 240시간 이수자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③ 유자격자로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조

* 원장(대표자) 겸임교사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사는 직무교육 이수시 “특별직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량 : 31,990명

- 총사업비 : 18,44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31,990	18,449,040		4,415,928	14,033,112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53,043,618	16,619,778	17,974,800	18,449,04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 임산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 신규 대상자일 경우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가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특수근무”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나. 제외대상

- 보조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야간연장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 단,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 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자격확인서 등 지급요건 증빙서류 확인 철저
 - ※ 보육교사교육원 현황은 본 지침 양성교육기관 참조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혁

- 시행시기 : 2003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사업량 : 24,205일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일82천원), 조리원(일69천원) 지원
- 총사업비 : 1,88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일)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4,205	1,882,240		480,154	1,402,086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5,664,074	1,975,468	1,806,366	1,882,24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	○	○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	○	○	○
	연가	1~10일	○	○	○	○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1일	○	○	○	○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	○	○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	○	○
모성보호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	○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년	○	×	×
	출산전후휴 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	×	×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하도록 반드시 안내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 최우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나. 사업관리

○ 채용방법(원장 채용)

-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인력풀 활용 및 연계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

○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 소지자여야 함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 식품위생법상 배치된 조리사(50인 이상 식사제공)의 대체인력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이외(50인 미만 식사제공)에는 자격 소지여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인력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 준용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자격확인, 경력관리 등 준용

다.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2,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20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조리원 : 일 69,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8,625원)으로 지급 가능, 단 지급액 원단위 발생시 올림하여 지급(예 : 7시간=60,375원=> 60,380원 지급)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65세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리원(0세아전용 · 공공형 · 가정민간 어린이집,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대체인력은 65세까지 지급 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제외대상

- 보조교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라.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임면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활용하여 불편 최소화
- 본 지침외 사항은 2020년 보육사업안내 준용

4-5**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교사 확충에 기여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정부서)에서 '16년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부서)로 이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치료사 포함)
- 사업량 : 12,389명
- 지원내용 : 월 110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5,961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2,389	15,961,282	8,624,000	4,115,186	3,222,09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47,353,509	15,327,650	16,064,577	15,961,282	

□ 사업 추진 안내**가. 지원목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나.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다. 지원단가 : 월 11만원

라.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사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 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 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월 포함 3개월)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6

담임교사지원비(구 근무환경개선비)

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혁

- 시행시기 : 담임교사 지원비(2012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2020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사업량 : 50,239명
- 지원내용 : 담임교사 월 240천원/인,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20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18,259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0,239	118,259,110	65,336,780	31,160,834	21,761,49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341,870,575	111,755,846	111,855,619	118,259,11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다. 지원단가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4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2만원
 -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 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 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담임교사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담임교사지원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담임교사지원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7**교사겸직원장 지원비****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 사업량 : 7,000명
- 지원내용 : 월 75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5,93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000	5,933,964	3,386,000	1,598,013	949,951	

※ 경기도 본예산 기준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17,974,158	5,992,630	6,047,564	5,933,964	

□ 사업 추진 안내**가.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지원단가 : 월 7만 5천원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4-8 대체교사 인건비

국 ·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어린이집 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역

- 시행시기 : 2009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사업량 : 855명
- 지원내용 : 대체교사 인건비 월 2,243천원/인(8시간 기준) 지원,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 일 82천원/인(8시간 기준)
- 총사업비 : 25,42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855	25,424,774	14,005,000	6,690,243	4,729,531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59,368,107	13,070,000	20,873,333	25,424,774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10일, 최대 10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0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 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훈련 기간 1일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긴급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수시 신청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라. 지원방식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 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 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 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0년 1월 ~ '20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 단, '18년까지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교사에 한하여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 2,243천원, '20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802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교사 지원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이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별과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바.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다. 지원내용

- 지원단가: 일 8만2천원(8시간 기준)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자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마.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4-9 보조교사 인건비

국 ·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장애인 3명 이상 보육)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A, B, 정원충족율 70% 이상)
- 사업량 : 16,053명(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량 포함)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월 1,002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63,477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비 포함)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6,053	163,477,334	90,553,000	43,184,689	29,739,645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341,057,169	65,242,074	112,337,761	163,477,334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②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
 -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2)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3) 지원인원

-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추가 지원(1개소 당 지원인원 상한 없음)
 - ①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 ②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지원(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정원충족률 70% 이상)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인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개)	2~4	5~7	8~10	11~13	14~16	

나. 세부기준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선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지원 가능
 - 다만, 지원 중 평가제 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이 속한 다음 월부터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
- 자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 지역 설정에 따라 ‘가. 지원기준’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운영 가능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기준 충족 시 정원 충족률 70% 미만도 선정 가능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 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 (지원단가) ‘20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02천원* 지원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 (참고) III.보육교직원 자격 > 4.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 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

라. 사업기간 : '20년 3월 ~ '21년 2월

마.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20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반수(아동수), 평가인증 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0.3~'21.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임면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준수

-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예시) '19.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0년, '21년은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4-10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국 · 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여 보육 교사 업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20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연장반 구성되어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과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
- 사업량 :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량 참고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보조교사 예산포함)
월 1,002천원/인 및 전담수당(담임교사지원비 예산포함) 월 120천원/인 지원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다.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지원
 - *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수당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바. 자격 조건

-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아.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시·군·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다만, 학기 초('20년 3~4월)는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기준 중 ②, ③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자. 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인 경우
 -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 자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4-11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2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11,086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 지원내용 :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의 80%(원장, 영아반 교사),
30%(유아반 교사) 지원
- 총사업비 : 205,39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1,086	205,392,690	115,208,100	55,196,664	34,987,92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531,913,699	146,359,439	180,161,570	205,392,690	

4-12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2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4,261명
 - 영아전담 407, 장애아전문 329, 야간연장 2,825, 장애아통합 700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영아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지급액의 원장·영아반교사 80%, 유아반 30%, 조리원 1명 100%
장애인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지급액의 원장·보육교사 80%, 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80%+월30만원(수당), 치료사 100%+월30만원(수당), 조리원 1명 100% ※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월 수당 15만원
야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최대 5명•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57,000원, 최대 5명•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반별 457,000만원, 최대 5개반
장애인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67.8만원

- 총사업비 : 70,495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261	70,494,569	39,532,400	18,972,053	11,990,11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200,473,428	61,966,719	68,012,140	70,494,569	

4-1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국 ·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33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개발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9,191명
- 지원대상 : 경기도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기준 : 직무*(8만원), 승급(14만원), 원장사전(16만원, 자부담)
* (직무) 기본교육/심화교육(8만원), 장기미종사자 교육(8만원, 자부담)
- 교육과정 : 직무(40시간), 승급(80시간), 원장사전직무(80시간)
- 총사업비 : 997,277천 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191	997,277	563,133	269,343	164,801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계	2,309,986	649,878	662,831	997,277	

※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계획 시행 ('20. 2월 중)

영아·다문화 보육의 전문교육 강화로 보육의 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 교육과정별 대상 및 인원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합계			8,340명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160시간)	· 교육 희망 보육교사	4,040명
	영아전문심화과정(20시간)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이후의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000명
	다문화전문과정(160시간)	· 교육 희망 보육교사	300명

-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8개소

- 교육과정별 시간 및 수강료

과정명		교육시간	수강료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 44만원(자부담)
	영아전문심화과정	· 20시간	· 10만원(자부담)
	다문화전문과정	·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 44만원(자부담)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교사교육원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추진

- 해당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 ※ 영아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0세아전용 어린이집 교사, ②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③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 ※ 영아전문심화교육 선발 우선순위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이후의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많은 순서로 선발(수료증과 경력증명서로 확인)
 - ※ 다문화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혼원 수가 많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②평가미인증 어린이집 교사 ③기타 희망자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성적(100점 만점) 80점 이상인 자
-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수강 필수
※ 영아전문심화과정은 제외

《수강방법》

-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www.dre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방법1 :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 취업 → 교육, 컨설팅 →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수강신청
- 방법2 : 상단 검색창에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입력 후 수강신청

- 수료자 관리

- 교육원 :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군으로 통보
※ 영아전문·다문화전문 교육과정의 경우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이수 확인 후 교육생의 교육 수료처리
- 시·군 : 인사기록부에 교육이수사항 기록 관리
- 교육과정별 수료자 인센티브

과정명		수료자 인센티브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영아전문심화과정	· 특수근무수당(월3만원 / 인) 추가 지원
	다문화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 ※ 영어·다문화전문 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 영어전문(심화)·다문화전문 교육과정 운영은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4-15**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도비**

보육품질
관리팀
8008-4733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해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평가)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성남시 등 20개 시·군
※ 신규인력양성과정(20개 시·군)
 - 남부(15개) : 성남, 부천, 용인,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안성, 하남, 여주, 양평
 - 북부(5개) : 고양, 남양주, 양주, 가평, 연천
- 지원내용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 사업량 : 274명
- 사업비 : 274,000천원(도 82,200천원, 시군 191,800천원)
※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남양주시 제안) 선정 신규사업, '20~'22년 3년간 사업추진 후 일몰

예산현황

- 총사업비 : 274,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정률보조)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74	274,000	82,200	191,800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방식 : 시·군별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교육 위탁계약 체결하여 교육 운영

4-16

장애인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도비

보육품질
관리팀
8008-4733

전문적인 대면교육을 통해 특수보육프로그램 및 장애아통합보육환경 등을 점검·개선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특수보육의 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평가)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전담교사 ※ 성남시 등 17개 시·군
 * 「장애인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참여 20개 시·군 중 3개 군(양평·가평·연천)에는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전담교사가 없어, 「전문성 강화 교육」 사업 미대상
- 지원내용 :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전담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
 - 통합보수 교수전략, 교육프로그램 작성·진단 등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의 전문적인 대면교육
- 사업량 : 173명
- 사업비 : 86,500천원(도 25,950천원, 시군 60,550천원)
 ※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남양주시 제안) 선정 신규사업, '20~'22년 3년간 사업추진 후 일몰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86,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정률보조)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173	86,500	25,950	60,55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방식 : 시·군별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위탁계약 체결하여 교육 운영

IV.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 보육료 지원기준표·처우개선비 지원표
 - 주요 보육통계표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20.1월 현재)

연번	시군명	운영기관	주소	개소일	비고
합계		운영 30개소(경기도 2, 27시군 28개)			
1	경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5층	2003.11.12	
2	수원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	2008.09.01	
3	수원동부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2015.11.20	
4	성남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복정동 667번지)	1993.03.01	
5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1999.07.10.	
6	용인시	용인승당대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2015.03.13	
7	안산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체육관 B6호(일동)	1994.05.01	
8	안양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안양동)	1997.03.12	
9	평택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2007.10.02	
10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23번길 37	2006.08.03	
11	화성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어린이문화센터 4층)	2009.08.25	
12	광명시	사회복지법인한솔교육희망재단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2011.01.20	
13	군포시	안양대학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2010.01.28	
14	김포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2014.12.22	
15	이천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길 38 (중리동)	2006.07.01	
16	오산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2015.09.01	
17	의왕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 지하1층(오전동)	2001.01.19	
18	과천시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2013.11.01	
19	광주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2016.04.27	
20	하남시	이케이보육경영연구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 125 5 ,6층 (풍산동 상아프라자2)	2018.07.01	
21	여주시	여주대학교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2	2019.10.01	
22	경기북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2008.02.27	
23	고양시	사회복지법인대건카리타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2003.04.03.	
24	남양주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2015.07.17	
25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2007.09.03	
26	파주시	파주시어린이집 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2012.06.01	
27	양주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 센터 내 3층(복정동)	2013.04.10	
28	구리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2013.11.26	
29	포천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내	2018.01.02.	
30	가평군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9	2020.03(예정)	

- '20년 개소예정 : 안성, 양평
- 분소운영(부지확보 중) : 동두천, 연천
- 이전추진 중 : 안산, 성남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2020. 2월 현재]

연번	교육기관명	원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23개 기관(보육교사교육원 8, 대학 15)					
1	경기보육교사교육원	유현정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8	235-2290	양성
2	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	민문기	구리시 검배로 61,3층	569-9090	양성
3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김성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둔야로 9, 2층	876-5546	양성
4	고양보육교사교육원	이만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2, 5층(능곡역프라자)	970-8100~1	양성
5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	김정남	부천시 경인로 194, 2층	032-655-0453	양성
6	수원여대보육교사교육원	고혜정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290-8065	양성
7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이창수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5, 6층(익성빌딩)	466-3131	양성
8	중앙보육교사교육원	오명숙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7, 2동8층 (신아탑푸르지오시티)	752-1217	양성
9	가천대글로벌미래교육원	신재홍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750-5760	
10	경기과기기술대산학협력단	권오상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496-4658	
11	한국복지대평생교육원	김지숙	평택시 삼남로 283	610-4714	
12	김포대학교	김상식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999-4299	
13	경복대영유아교육원	박미경	남양주시 진전읍 경복대로 425	570-9925	
14	대림대평생교육원	이상욱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467-4502	
15	동원대평생교육원	이길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	760-0202	
16	명지대자연사회교육원	차태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330-6117	
17	부천대평생교육원	김형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032)610-0575	
18	수원과학대평생교육원	이해영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288	350-7518	
19	안산대평생교육원	신부식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400-7096	
20	강남대평생교육원	김병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899-7075	
21	신한대평생교육원	최승구	동두천시 벌마들로 40번길 30	870-2964	
22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부천시 소사구 호원로 489번길 52	032-340-9387	
23	평택대글로벌휴먼평생교육원	신승연	평택시 서동대로 3825	659-8006	

보육료 지원 기준

(단위: 천원)

구 分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 고			
수 한도액	국 공 립	470	414	343	240		삭제				
	민 간				329	306					
	가 정				332						
	시간 연장(시간당)	3.2 (장애아 4.2)									
2 4 시 간		940	828	686	44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의 200%				
지원 단가	보육료 (소득무관)	0~2세	470	414	343	240		삭제			
		시간연장 (시간당)	3.2 (장애아 4.2)								
		24시간	705	621	514.5	330		보육료지원액의 150%			
	누리차액 보육료	민 간				89	66	전액 지원			
		가 정				92					
	장 애 아	478(누리과정 장애아 478)					만12세이하 미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어린이집 4시간 이상 이용시(차상위이하 : 100, 장애아동 : 239)									
기 본 보 육 료		500	272	184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장애아 559) (장애아방과후 476)			
가정 양육수당	0~5세	200	150	100							
	농어촌	200	177	156	129	100					
	장애인동	200			100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단위: 천원)

구 分		계	도 자체사업			국비지원사업		누리과정
			처우 개선비	특수 근무수당	처우 개선비 추가지원	담임교사 지원비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 사	영아반 (0~2세)	520	200	50	30	240	
		유아반 (3~5세)	560	110		90		*영유아 협 합반240
	교사겸직원장		125		50		75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 사	영아반 (0~2세)	520	150	50	80	240	
		유아반 (3~5세)	560	110		90		*영유아 협 합반240
	원 장	교사겸직 원장	275	150	50			75
		원 장	150	150				

※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인 경우 도비지원 처우개선비 △3만원(누리과정은 △5만원)

주 요 보 육 통 계

□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19. 12월말)

구 분	총 영유아수 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②	유치원 이용 유아수 ③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수 ④=(①-②-③)
전국(%)	2,726,967(100)	1,365,085(50.1)	633,913(23.2)	727,969(26.7)
경기도 (%)	776,603(100)	389,004(50.1)	176,782(22.7)	210,817(27.2)
서울시(%)	438,969(100)	217,444(49.5)	78,009(17.8)	143,516(32.7)

* 총 영유아수 : 주민등록통계 0~6세 / 유치원 이용 유아수 : 교육통계 2019년 4월 기준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 개소/ '19.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37,371(100)	4,324(11.6)	1,343(3.6)	707(1.9)	12,568(33.6)	17,117(45.8)	159(0.4)	1,153(3.1)
경기도 (%)	11,305(100)	924(8.2)	66(0.6)	116(1.0)	3,642(32.2)	6,222(55.0)	67(0.6)	268(2.4)
서울시(%)	5,698(100)	1,661(29.2)	28(0.5)	101(1.8)	1,512(26.5)	2,098(36.8)	33(0.6)	265(4.7)

□ 어린이집 정원

(단위 : 명/ '19.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686,873(100)	269,500(16.0)	124,040(7.4)	51,736(3.1)	832,749(49.4)	318,092(18.9)	5,297(0.3)	85,459(5.1)
경기도 (%)	464,409(100)	63,932(13.8)	5,684(1.2)	9,222(2.0)	247,378(53.3)	116,207(25.0)	2,010(0.4)	19,976(4.3)
서울시(%)	254,538(100)	96,595(37.9)	1,890(0.7)	5,878(2.3)	91,892(36.1)	38,168(15.0)	1,042(0.4)	19,073(7.5)

□ 어린이집 현원

(단위 : 명/ '19.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365,085(100)	232,123(17.0)	86,775(6.4)	38,538(2.8)	664,106(48.6)	273,399(20.0)	4,121(0.3)	66,023(4.8)
경기도 (%)	389,004(100)	56,136(14.4)	4,218(1.1)	7,260(1.9)	201,521(51.8)	102,424(26.3)	1,683(0.4)	15,762(4.1)
전국대비%	(28.5)	(24.2)	(4.9)	(18.8)	(30.3)	(37.5)	(40.8)	(23.9)
정원충족률	83.8%	87.8%	74.2%	78.7%	81.5%	88.1%	83.7%	78.9%
서울시 (%)	217,444(100)	85,465(39.3)	1,580(0.7)	4,872(2.2)	77,121(35.5)	33,223(15.3)	850(0.4)	14,333(6.6)
정원충족률	85.4%	88.5%	83.6%	82.9%	83.9%	87.0%	81.6%	75.1%

□ 특수보육어린이집

(단위 : 개소/ '19. 12월말)

구 分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공공형	0세아
전국	12,975	405	176	1,100	229	8,015	153	312	2,317	268
경기도	3,311	42	21	367	8	1,874	41	49	641	268
(전국대비%)	(25.5)	(10.4)	(11.9)	(33.4)	(3.5)	(23.4)	(26.8)	(15.7)	(27.7)	(100)
서울시	2,687	35	8	368	80	2,092	28	76	-	-
(전국대비%)	(20.7)	(8.6)	(4.5)	(33.5)	(34.9)	(26.1)	(18.3)	(24.4)		

□ 보육교직원

(단위 : 명/ '19. 12월말)

구 分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전국	331,444(100)	37,168(11.2)	239,973(72.4)	2,014(0.6)	658(0.2)	923(0.3)	1,121(0.3)	31,090(9.4)	18,497(5.6)
경기도	93,803(100)	11,245(12.0)	68,032(72.5)	403(0.4)	71(0.1)	275(0.3)	339(0.4)	10,397(11.1)	3,041(3.2)
(전국대비%)	(28.3)	(30.3)	(28.3)	(20.0)	(10.8)	(29.8)	(30.2)	(33.4)	(16.4)
서울시	54,583(100)	5,677(10.4)	39,731(72.8)	451(0.8)	73(0.1)	162(0.3)	173(0.3)	4,190(7.7)	4,126(7.6)
(전국대비%)	(16.5)	(15.3)	(16.6)	(22.4)	(11.1)	(17.6)	(15.4)	(13.5)	(22.3)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보육정책과장	남상덕	031-8008-2540	· 보육정책 업무 총괄
보육정책팀장	이호원	031-8008-2370	· 보육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안보경	031-8008-4718	· 주요회의 및 보육정책 수립 등 현안
주무관	이서윤	031-8008-4720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주무관	박세미	031-8008-2799	· 보육과 예산,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등
주무관	강민희	031-8008-2598	· 서무, 회계, 표창 등
보육지원팀장	정덕해	031-8008-2571	· 보육지원팀 업무 총괄
주무관	전창복	031-8008-2572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주무관	김미선	031-8008-4715	· 시간제 보육지원 등
주무관	김양희	031-8008-2573	·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주무관	동창환	031-8008-2574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보육기반팀장	나명숙	031-8008-2551	· 보육기반팀 업무총괄
주무관	한수경	031-8008-254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주무관	이종홍	031-8008-4732	· 직장어린이집 운영, 안전관리 업무 등
주무관	김지은	031-8008-2543	·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
보육컨설팅팀장	권용숙	031-8008-2595	· 보육컨설팅팀 업무 총괄
주무관	이화영	031-8008-2596	· 어린이집 컨설팅 등
주무관	한은정	031-8008-2568	·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설치 운영 등
보육품질관리팀장	정연주	031-8008-2557	· 보육품질관리팀 업무 총괄
주무관	최서영	031-8008-2556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도입 활성화 등
주무관	김순천	031-8008-4733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관리시스템 관리 등
주무관	김신혜	031-8008-4726	· 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
주무관	김선주	031-8008-4744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관리

